

손해사정 수수료 Table

2014.12.01

1. 3종 피해물 중 자동차가 아닌 피해물

[단위:원]

손해사정금액	요율(%)	기준액	비 고
1백만원 이하		300,000원	
5백만원 이하		400,000원	
5백만원 초과 ~ 1천만원 이하		500,000원	
1천만원 초과 ~ 2천만원 이하	5.06	1,012,000원	
2천만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	4.18	1,254,000원	
3천만원 초과 ~ 5천만원 이하	3.74	1,870,000원	
5천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2.88	2,882,000원	
1억원 초과	2.2	사전협의	

- 주) 1. 위장사고 면책으로 결정된 건은 금액 및 난이도 감안 별도 협의
 2.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 적용
 3. 손해사정액 : 과실상계전 금액

2. 지방권은 교통비 및 통행료 별도 (교통비 : 1km:200원)

3. 출발지는 손사사무소 기준

4. 대중교통 및 출장지 2차 교통비 : 실비

5. 일비 : 3만원

숙박비 : 4만원